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402호 2014. 5.27 (화요일)

<b>고 시</b>
------------

- 하동군 고시 제2014-2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65차) ..... 2

<b>공 고</b>
------------

- 하동군 공고 제2014-378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공고 ..... 4
- 하동군 공고 제2014-382호      도로사용개시 공고 ..... 5
- 하동군 공고 제2014-388호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 31
- 하동군 공고 제2014-393호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안 입법 예고 .. 49
- 하동군 공고 제2014-394호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30
- 하동군 공고 제2014-395호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안 입법 ..... 31
- 하동군 공고 제2014-396호      하동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안 입법예고 ..... 49

<b>회 람</b>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14-44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65차)

우리군 도로명주소 신규부여 및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5. 15.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68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3 ) 제 402 호

## 도로명주소고시조서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접수구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659-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68	2007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338-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51-140	20070618	산 허리의 바위들의 배치가 배의 내부와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철성로 813-1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철성로 813-13	20070618	도로구간 종점에 위치한 철성봉이라는 산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확심길 37-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확심길 317-8	20070618	확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94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금남길 172	20070618	칼남재, 양지뜸,인골마을을 합한 행정상의 명칭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48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시장길 17-3	20070618	새로 생긴 길이고 시장과 인접하기 때문에 진교시장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363-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85-8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51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길 73-15	20070618	안심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1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13	20080402	큰 은행나무로 가는길로 은행나무길로 명명	건물번호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황천리 717-5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황보길 12-66	20080402	황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347-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대덕길 16	20080402	대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253-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13	20090302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253-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14	20090302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하동군공고 제2014 - 378호

###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가 격 기 준 일 : 2013. 1. 1.
-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4. 5. 16.
-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1필지

(단위:원/m<sup>2</sup>)

순번	토 지 소 재	당시지목	결정지가	정정지가	비 고
1	화개 부춘 892-1	임야	7,840	17,700	표준지 선정 착오에 따른 오류 정정

####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055-880-21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5 월 16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공고 제2014-382호

##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하동군수 인

1. 도로의 종류 : 군도
2. 노 선 명 : 군도 6호(노량~신방)
3. 사용개시구간 :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44-6번지~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620-4번지 (L=7.238km)
4. 중요 경과지 :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대송리, 금성면 가덕리
5. 전용 구간 :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24-1번지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317-3번지(L=7.238km)
6. 중용 구간 : 해당없음
7. 개시 일시 : 2014. 5. 22(14:00~ )
8. 비 고 :

## 하 동 군 공 보

( 6 ) 제 402 호

하동군 공고 제2014 - 388 호

# 하동군 도로명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사업에 의해 부여된 도로명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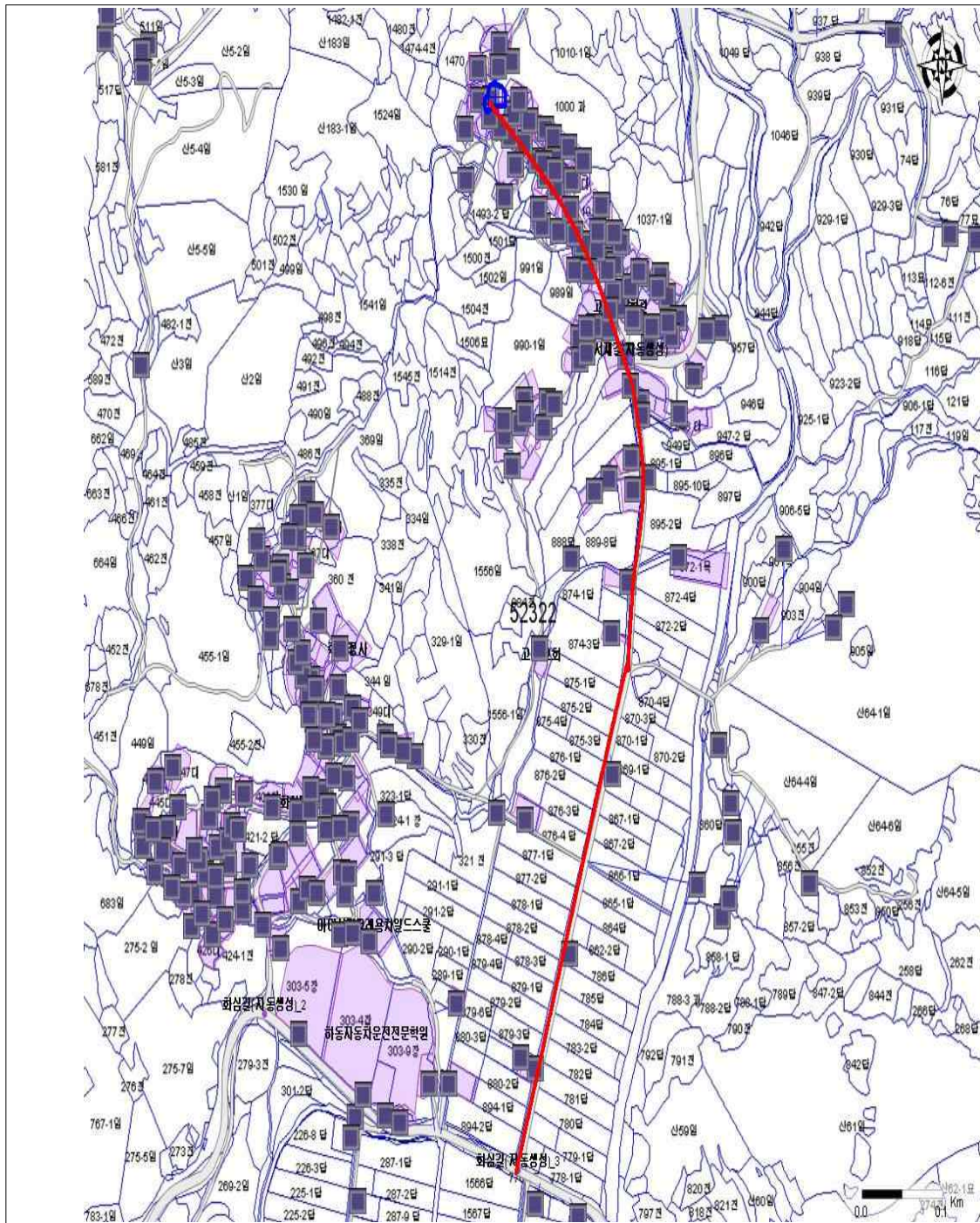
## 하 동 군 수

1. 기 간 : 2014. 5. 20. ~ 6. 15.
2.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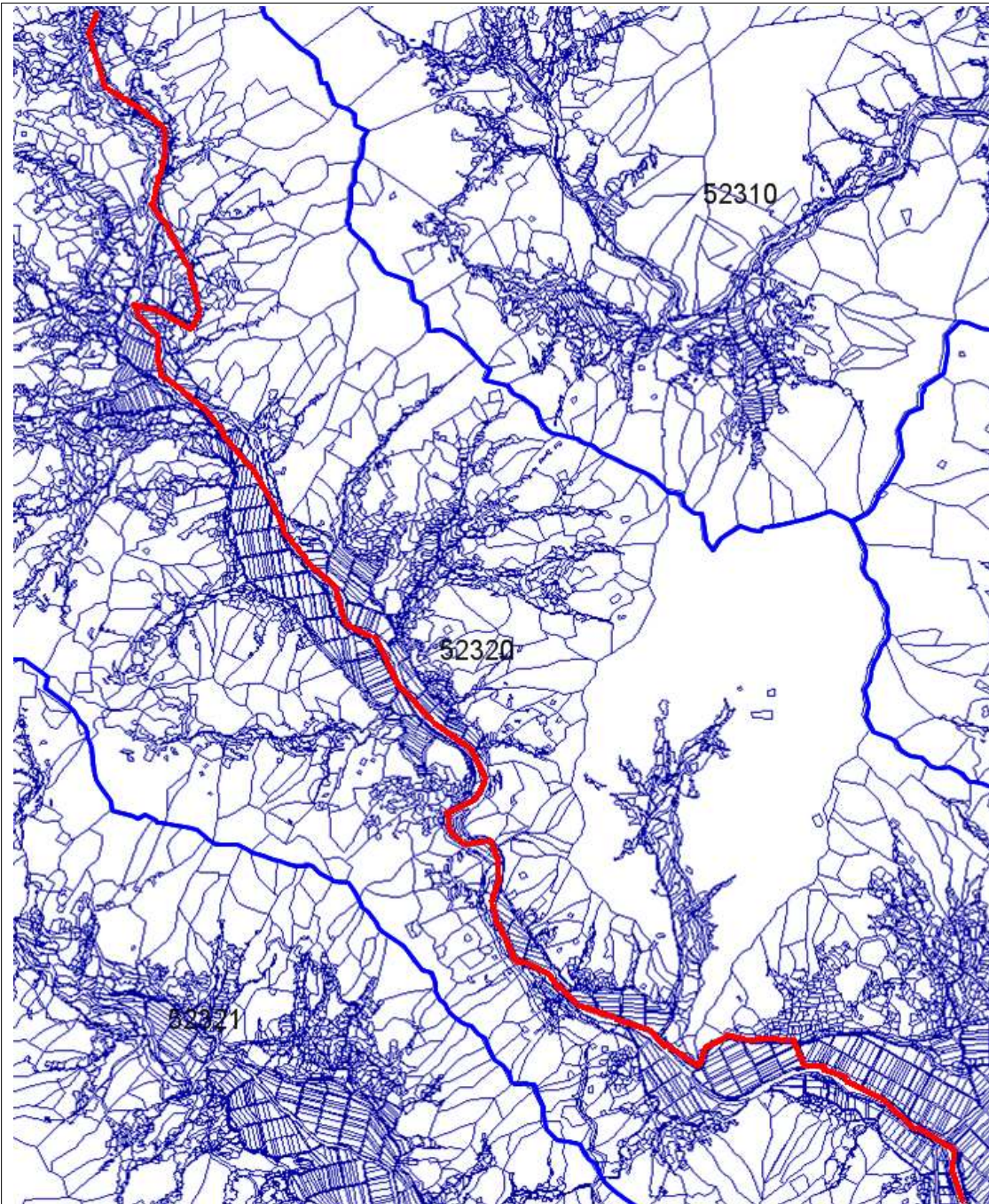
일련 번호	구분	도 로 명 (도로명코드)	도로 구분	관할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변경사유	비고
					시작 지점	끝지점	중심선	길이 (m)	폭 (m)				
1	현재 도로명	고동골길	길	하동읍	하동읍 두곡리	하동읍 두곡리	별첨 도면	938	5	20	1→94	옛 지명보다는 마 을명을 반영하고 자 함	도로명 변경 신청
	예비 도로명	고서길			894-2	1489							
2	현재 도로명	칠성로	로	적량면 횡천면	횡천면 남산리 상남마을 입구	적량면 서리 동점마을 동점마을 회관	별첨 도면	8211	5	20	1→822	도로구간 종점에 위치한 칠성봉이 라는 산이름보다 는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도로명 변경 신청
	예비 도로명	삼화실로			중남교								

3. 공고내용 : 도로명 변경(안) 2건
4. 의견 제출 방법 : 도로명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5일까지 하동군에 서면(팩스 민원과055-880-2078, 우편, 직접 방문) 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주소, 연락처(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도로명(고동골길) 변경(안)



도로명(칠성로) 변경(안)





하동군 공고 제 2014 -393호

##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안

2. 제안 이유

가. 대통령주재 4차 투자활성화대책 회의시(무역투자진흥)규제 문제점 지적 및 기업민원 피해보호 개선 방안 마련 규제 제정권고

나. 행정서비스현장규정 제4조제1항(대통령훈령 제257호)을 근거로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3. 주요 골자

#### 가. 현장의 기본원칙 및 구성(제1조~제6조)

- 합리적인 현장의 운영을 위해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 최우선, 보호 정책의 구체화 및 구속력 강화의 원칙을 고려
- 규제 신고고객 불이익금지 및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원행정 실천 다짐

#### 나. 현장의 개정, 실천, 공표, 서비스 개선(제7조~제10조)

- 현장의 성실한 준수로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 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현장의 개정사항 반영과 공표가 필요
- 규제신고 고객보호 위반행위 등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조사하여 개선하고, 재발방지 노력

#### 다. 이행실태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고(제11조~제12조)

- 현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조치 실시

###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경제수산과장,

전화 880-2202, FAX 880-2199, e-mail yg461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현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군과 군민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현장 이행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현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현장의 내용)** ① 현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합리적인 현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하동군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현장의 구성)** 현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 전문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금지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현장 개정 절차)** ① 현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현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현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14 ) 제 402 호

② 현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현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위원회 심의·확정
3. 현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현장의 실천)** 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현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현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장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현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현장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현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군수는 현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조제1항 관련)

##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현장

우리 하동군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과 군민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동군 공고 제 2014 - 394 호

##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 하 동 군 수

#### 1. 제정이유

- 나.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기준 설정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증대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안 제1조)
  -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함
- 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안 제4조)
  - 지원대상의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공익성 및 신뢰도 제고
-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다. 사업완료시 정산 보고(안 제15조)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증대 및 사후평가 실시로 합목적성 제고

###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기획감사실, 전화 880-2022,  
FAX 880-2019, e-mail code19@korea.kr)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 하 동 군 공 보

( 20 ) 제 402 호

###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당해연도 예산편성시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경비 또는 세입세출예산 자체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또는 군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개인, 친목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공고 및 신청)** ①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및 심사)**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하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군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통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사회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통보 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사업시행 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체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5조(정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하 동 군 공 보

( 22 ) 제 402 호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내용	분 야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장 소	
	총 소요금액		천원	신청액	천원
			자부담	천원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단체의 사회활동 실적(구체적 입증 자료)
3. 그 밖에 참고사항(자기소개서, 단체등록증 사본, 정관 등)

※ 지원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 
- 
- 

4. 세부사업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 
- 

5. 사업비 산출내역

적요(품명)	계	자부담	군비 보조금	산출기준	비고
계					

년. 월. 일

사회단체명(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3. 사업기간 :
4. 청구금액 및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군비보조	자부담	기 타			산출기초
				소계	기(부)금	기 타	
계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소재지

대표자

예금계좌번호

( 은행)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사항



1. 보조사업 추진 실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구분	계	군비보조	자체부담	기 타			비고
				소계	기부금	기타	
계							

하동군 공고 제 2014 -395호

##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 하 동 군 수

#### 1. 개정이유

- 가. 보조금의 집행기준 정비 및 투명성 확보로 재정운영 효율성 증대
- 나. 지방세수 확충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 근거마련

####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 정비(안 제4조)
- 나. 보조사업자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규정 신설(안 제6조)
- 다. 보조금 별도계정 설정 규정 신설(안 제9조의1)
- 바. 보조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의 처분 제한규정 신설(안 제20조)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기획감사실, 전화 880-2022, FAX 880-2019, e-mail code19@korea.kr)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를 삭제 한다

제5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8조제1항 중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를 “포함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통지전에”를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로 한다.

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 한다

제19조를 삭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완료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자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u>다만,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기업체, 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없다.</u></p>	<p>제4조(보조대상) ① 군수는 ----- ----- ----- ----- <u>&lt;단서삭제&gt;</u></p>
<p>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에 군수가 공고하는 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u></p>	<p>제5조(보조신청) ①----- ----- ----- -----<u>&lt;단서 삭제&gt;</u></p>
<p>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생략) 1. ~ 4. (생략) <u>&lt;신설&gt;</u></p>	<p>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p>
<p>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u>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u></p> <p>② <u>보조통지전에</u>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 ----- -----<u>포함</u> <u>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u></p> <p>② <u>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u> ----- ----- ----- -----</p>

하 동 군 공 보

( 34 ) 제 402 호

<p><u>&lt;신설&gt;</u></p>	<p><u>제9조의1(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u></p>
<p><u>제18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u>-----</p>	<p><u>&lt;삭제&gt;</u></p>
<p><u>제19조(수당 및 여비)</u>-----</p> <p>-----</p>	<p><u>&lt;삭제&gt;</u></p>
<p><u>&lt;신설&gt;</u></p>	<p><u>제18조(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완료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u></li> <li><u>2. 자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u></li> <li><u>3. 담보의 제공</u></li> </ol>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안)**

( 제정 ) 1988.05.26 조례 제1020호  
( 일부개정 ) 1990.10.11 조례 제1165호  
( 일부개정 ) 2003.12.26 조례 제1670호  
( 일부개정 ) 2006.06.22 조례 제1767호  
( 일부개정 ) 2013.04.10 조례 제2001호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조1767, 개정 2013.4.10.조20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다만,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기업체, 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없다) ~<개정 2003.12.26>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자는 사업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에 군수가 공고하는 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6>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1.조1165>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하 동 군 공 보

### ( 36 ) 제 402 호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4.10.조200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4.10.조2001>

②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 1(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변경에 따른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다. <개정 1990.10.11.조1165>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조2001>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4.10.조2001>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신설 2003.12.26>

-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하동군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교육계 인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06.6.22.조1767>

**제19조(수당 및 여비)** <신설 2003.12.2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완료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자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보조금관리규칙(1965. 11. 23 제22호)은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하동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0.10.11조1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26.조1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6.22.조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14 -396 호

## 하동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 하 동 군 수

#### 1. 개정이유

-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정 투·융자사업의 객관성, 엄정성을 강화 하고자 심사기준 재정비 등에 대하여 내용을 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투융자 심사위원회 정기회 개최 횟수 조정(안 제5조)  
- 상·하반기 각1회 → 연 3회
- 나. 자체심사, 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기준 정비(안 제6조)
- 다. 투자사업 심사기준 미적용대상 규정 정비(안 제6조)
- 라. 투자 심사기준 및 절차 미적용 사업 별표 신설(안 제6조)
- 마. 재심사 대상 사업 기준 추가(안 제9조)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기획감사실, 전화 880-2022,  
FAX 880-2019, e-mail code19@korea.kr)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하동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 개정 안

하동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하반기 각 1회”를 “매년 3회로 나누어”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50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중 “사업”을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라, 마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마. 총사업비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신규 투자사업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중 “50억원”을 “40억원”으로,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나목의 “시·군”을 “시·군·구”로 하고, “10억원 이상”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다목의 “사업”을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군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중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나목의 “시·도”를 “시·군·구”로,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라목의 “사업”을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재해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아. 국가 주관행사로서 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9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융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6.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다만, 재심사의뢰 시점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7.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융자 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하 동 군 공 보

( 44 ) 제 402 호

8. 당초 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u>상·하반기 각 1회</u>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 <u>매년 3회로 나누어</u> ----- -----
제6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생략)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 <u>50억원</u>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나. (생략)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u>사업</u> .  <u>&lt;신설&gt;</u>  <u>&lt;신설&gt;</u>  2. 도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u>50억원</u> 이상 <u>300억원</u>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제6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현행과 같음) 1. ----- 가. ----- ----- -- <u>40억원</u> -----.  나. (현행과 같음)  다. ----- ----- <u>사업과 홍보관 사업</u> .  라. <u>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u> 마. <u>총사업비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신규 투자사업</u>  2. ----- 가. ----- <u>40억원</u> ----- <u>100억원</u> -----
나. 둘 이상의 <u>시·군</u> 과 관련되는 총사업비 <u>10억원</u>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u>사업</u>	나. ----- <u>시·군·구</u> ----- -- <u>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u> -----  다. ----- ----- <u>사업과 홍보관 사업</u> .

하 동 군 공 보

( 46 ) 제 402 호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둘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다. (생략)

라.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생략)

1.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가. ~ 자. 신설>

라.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군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

가. -----100억원-----

나. -----시·군·구-----  
-----100억원-----

다. (현행과 같음)

라. -----  
-----사업과 홍보관 사업

② (현행과 같음)

1. -----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재해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아. 국가 주관행사로써 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9조(재심사) (생략)

1. ~ 4. (생략)

<5. ~ 8. 신설>

제9조(재심사)(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당초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융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6.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다만, 재심사의뢰 시점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7.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융자 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8. 당초 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축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한다.

## 하 동 군 공 보

( 48 ) 제 402 호

[별표]

### 심사제외 대상사업

(제6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5. 받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9.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 (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 (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 (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자연재해대책법」 (안전행정부), 「하천법」 (국토교통부)
18.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공단의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 (안전행정부)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 하동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안)

( 제정 ) 2001.07.16 규칙 제 907호  
( 일부개정 ) 2005.06.30 규칙 제 959호  
( 일부개정 ) 2006.06.22 규칙 제 983호  
( 일부개정 ) 2010.10.08 규칙 제1040호  
( 일부개정 ) 2011.04.05 규칙 제1057호

( 일부개정 ) 2013.04.10 규칙 제1086호 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규983, 개정 2013.4.10.규1083>

**제2조(투자심사기준)**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0.규1083>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필요한 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개정 2013.4.10.규1086>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동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2.규983>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하동군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 소속원 등 지방 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6.30.규959>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개정 2013.4.10.규1086>
-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06.6.22.규983>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3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회 개최시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규1086>

## 하 동 군 공 보

( 50 ) 제 402 호

**제6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10.10.8.규1040>

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추진하는 모든사업. 단,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군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신설 2010.10.8.규1040, 개정 2011.4.5.규1057>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마. 총사업비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신규 투자사업

2. 도의뢰심사 <개정 2006.6.22.규983>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10.10.8.규1040>

나. 둘 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개정 2010.10.8.규1040, 개정 2013.4.10.규1086>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신설 2010.10.8.규1040, 개정 2011.4.5.규1057>

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군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중앙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둘 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라.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개정 2010.10.8.규1040>

마. 10억원 이상 외국에 투자하는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4.10.규1086>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발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재해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아. 국가 주관행사로써 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7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서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규983, 개정 2011.4.5.규1057>

③ 실과소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받은 투자심사의뢰서를 검토하여 자체심사의 경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심사하고, 도 또는 중앙의뢰 심사의 경우 1차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규983, 개정 2011.4.5.규1057, 개정 2013.4.10.규1086>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군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신설 2011.4.5.규1057>
  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1.4.5.규1057, 개정 2013.4.10.규1086>
- ④ 군수는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지 확인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투자심사결과와 통지 등)** <개정 2013.4.10.규1086>

-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 및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는 도 및 중앙의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3.4.10.규1086>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규1086>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자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자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자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아니되는 경우 <개정 2013.4.10.규1086>

**제9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1.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2.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 2010.10.8.규1040>
    - 나. 도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 2010.10.8.규1040>
    -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 2010.10.8.규1040>
  4.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5. 당초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융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자원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6.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자원 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 다만, 재심사의뢰 시점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7.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융자 심사시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8. 당초 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한다

**제10조(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규983, 개정 2013.4.10.규1086>

**제11조(지방재정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 하 동 군 공 보

( 52 ) 제 402 호

서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
3.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신청
4. 그 밖에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13.4.10.규1086>

**제12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05.6.30.규9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06.6.22.규9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0.10.8.규10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1.4.5.규1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규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 (제6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5. 받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9.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 (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 (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 (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자연재해대책법」 (안전행정부), 「하천법」 (국토교통부)
18.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공단의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 (안전행정부)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